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감염병 대응 소과정에서의 효과적인 대응 및 관리에 필요한 외부기관의 주요 연계 정보에 대하여 명시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여 정보연계 관련 시스템 항목을 신설하고자 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3제3항제9호를 제12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 운영정보시스템
10.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예방 집중통합관리시스템
11. 「검역법」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의3(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) ①·② (생 략)	제22조의3(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법 제40조의5제3항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”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9.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
<u><신 설></u>	10.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
<u><신 설></u>	11. 「검역법」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
9. (생 략)	12. (현행 제9호와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	
연 락 처	(043) 719 - 7136